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623호

# 2025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

중소기업의 신기술·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『2025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』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2월 30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

# 1. 사업개요

○ 중소기업의 신기술·신제품 개발 및 제품·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

# < 2025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>

(단위 : 억 원)

세부사업명	내역사업명		지원	개발	지원	지원	추진 일정			
세구시티경	ᆌᅾᄼ	1 8 6	규모 기간 힌		한도	한도 비율		공고	접수	선정
	수출지향형		170	4년	20	CE0/	상반기	1월	2월	4월
	十百/	18.8	176	4 년	20	65%	하반기	5월	6월	9월
중소기업	시장혹	하대형	732	3년	36	75%	상반기	1월	2월	4월
기술혁신개발	710=	i 41 6	132	그근	30	13/0	하반기	5월	6월	9월
	ハントに	비오성	271	วเส	5	75%	상반기	1월	2월	4월
	시장대응형		2/1	2년	5	75%	하반기	5월	6월	9월
	FIE	딤돌 231 1	1.5년	2	75%	1차	4월	4월	6월	
	<b>└</b>   c		231	1.5건		13/0	2차	6월	6월	8월
		OTHP의 LCO	   2년   5	5	75%	상반기				
창업성장	일반	일반형	568	2건	5	/5%	하반기			
기술개발	TIPS	딥테크	210	214	1.	750/	상반기	ე <b>으</b> I	세부 사업공고	
	HPS	ᆸᆌᅶ	210	0 3년	15	75%	하반기	- 3월	사 합	<sup>증고</sup>   조
		7 = #	1.40	214	12	750/	상반기			
		글로벌	140	3년	12	75%	하반기			
디지털기반 중소제조산재예방 기술개발	디지털기반 중소제조산재예방 기술개발		16.5	2년	6.6	75%	-	7월	7월	9월

세부사업명	내역사업명		지원	개발	지원 한도	지원	추진 일정			
세구시합정			규모	기간		비율	구분	공고	접수	선정
	산학협력	예비연구	214	8개월	0.5	75%	상반기	1월	2월	5월
산학연	기술개발	사업화R&D	102	2년	2.6	75%	상반기	1월	2월	4월
Collabo R&D	산연협력	예비연구	92	8개월	0.5	75%	상반기	1월	2월	5월
	 기술개발	사업화R&D	42	2년	2.6	75%	상반기	1월	2월	4월
지역혁신선도기업	주력 생태 <i>7</i>	산업 #구축	137	2년	7.0	75%	상반기	1월	1월	3월
육성	지역 역량	기업 강화	78	2년	2.0	75%	상반기	1월	1월	3월
	신진연 채용	구인력 지원	52	3년	기준 연봉 50%	50%	상반기	1월	1월	5월
중소기업	고경력( 채용	연구인력 지원	42	3년	연봉 50%	50%	상반기	1월	1월	5월
연구인력지원	공공연 <sup>(</sup> 파견	연구인력 지원	20	3년	연봉 50%	50%	상반기	1월	상시	상시
	중소기업 현장맞춤형	연구인력 형양성지원	48	1년	최대 0.14	100%	상반기	1월	상시	상시

1) 지원규모 : 각 사업별 신규과제 지원금액(계속과제 지원금액 및 기획평가비 제외)

2) 개발기간・지원한도・출연금 비율 : 지원 가능한 '최대' 수준을 의미함

3) 지원비율 및 추진일정 : 세부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

※ 공고는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진행, 정확한 지원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

# 1 정책방향

- ① 전략기술분야에 신규과제를 집중 투입하고, 과제 목표를 객관적으로 타당 하게 설정토록 하는 등 시장에 도전하는 혁신적 R&D 지원
- ② 다수 기업에게 파급효과 미치는 공동효과형 R&D, 글로벌해외연구소와 현지공동 R&D 등 R&D 생태계를 혁신하는 네트워크형 R&D 추진
- ③ 기존 출연R&D를 보완·고도화하여 민간투자·융자 방식 등 시장기능을 접목하는 등 재정투입을 효율화하는 R&D 지원

# 2 신청자격

- 중소기업: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- ※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

# ③ 신청 방법

-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(IRIS)을 통한 온라인 신청, 일부 사업에 한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SMTECH) 활용
  - ☞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(IRIS): www.iris.go.kr
  - ☞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SMTECH): www.smtech.go.kr
  - 세부 사업별 과제 신청·접수 시스템은 각 사업 공고문에 명시 예정, 참여연구원별 국가연구자번호 및 기업 범용공인인증서 사전 준비 필요
- ※ 원활한 과제 신청·접수를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책임자(과제책임자)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
- ☞ 국가연구자번호(舊 과학기술인번호): '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(IRIS)' 회원 가입 후, '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'을 통해 개인별 발급

#### ④ 세부 사업별 공고

- ㅇ 본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
  - 중소벤처기업부 (www.mss.go.kr)
  -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 (www.iris.go.kr)
  -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(www.smtech.go.kr)
  -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

##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% 이내,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% 이상
  - 다만, 연구개발비 내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비중이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기관부담금(현금·현물)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별 공고문을 통한 확인 필요
- ※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% 이내로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

#### **6** 기술료

-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(경상기술료)
  - 기술개발 결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(주관/공동)이 과제 협약 시 약정한 내용을 근거로 기술개발 '완료' 판정 후 5년 간 기술개발 결과물 실시에 따라 발생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
- ※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

### 7 보안등급 분류

-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(보안과제/일반과제)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
  - 보안과제는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연구개발과제임
  -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 위원회,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(보안과제 ↔ 일반과제)
-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21조, 「국가연구 개발혁신법 시행령」제44조부터 제48조, 「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」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
- ※ 신청과제의 보안등급(보안과제/일반과제)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

### 8 지원제외 사항

아래 지원제외 요건 외 사업별 지원제외 요건을 별도 지정할 수 있으며, 상세한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

-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사업계획서 등 과제 신청·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
- ②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(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 등), 각 기관의 대표자, 연구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-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 [기술료 납부, 회수금,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, 성과 실적 입력(장비 구입실적 등) 등]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    - \*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
    - \*\*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(공사)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
  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③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(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 등),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- \* 단,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(공사)인 경우에는 예외
  - 기업의 부도(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)
  - 기업이 휴·폐업 상태인 경우
  -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금융질서문란,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
    - \*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
  - 국세·지방세 체납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, 관세 체납, 고용·산재보험 체납, 임금체불 등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
    - \*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등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
  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뤄진 경우
    - \*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는 경우 예외
  -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,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    - \* 세부 사업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별 공고문을 통한 확인 필요
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,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
  - \*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정보 조회 시 조회 되는 경우
- 관련규정 또는 세부사업별 공고에서 명시하는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
-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, 개발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뚜렷한 차별성이 없는 경우
-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'신청제한' 또는 '지원제외'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

## 9 관련 법령 및 규정

- ※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, 출연금 지원기준, 평가절차 및 방법, 기술료,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,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
- ※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

#### ○ 법(법령)

-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·시행령·시행규칙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· 시행령 · 시행규칙

#### ○ 요령(고시)

-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,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,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운영규칙
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

#### ○ 관리지침

-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개별 사업공고 시 안내되는 관리지침
-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

### 2. 사업별 지원계획

※ 지원내용,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(1)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

### □ 사업개요

-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-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&D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
- □ **지원규모**: 5,680억 원(신규 1,179억 원, 계속 4,501억 원)
- □ 지원대상: 최근연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 중소기업
  - \* 과제별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

### □ 지원내용

- 수출지향형(176억 원):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
- 시장확대형(732억 원) : 중소기업 기술개발 효과·효율성 제고 및 성과 창출 강화를 위해 민간투자연계형, 협력(협업)형, 성과형 등 다양한 방식의 기술개발 지원
- 시장대응형(271억 원) : 유망 기술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수요대응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

내역사업	개발기간 및 지원한도	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	지원방식
수출지향형	최대 4년, 20억 원	65% 이내	полп
시장확대형	최대 3년, 36억 원	750/ 011	자유공모 (품목지정), 지정공모
시장대응형	최대 2년, 5억 원	75% 이내	시영하도

# (2) 창업성장기술개발

#### □ 사업개요

-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&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
- □ **지원규모**: 5,960.1억 원(신규 1,149.8억 원, 계속 4,810.3억 원)
- □ **지원대상**: (공통사항) 창업 후 7년 이내, 매출 2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\* 지원대상 세부 자격조건은 차수별 사업 시행 공고에서 확인

### □ 지원내용

- ① 디딤돌(231억 원) : 잠재 가능성을 보유한 혁신 아이디어, 글로벌 기술 등 스타트업의 도전과 기술개발 성과 창출을 견인할 기술을 선별·집중 지원
  - (균형성장)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, 글로벌向 기술개발, 여성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R&D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의 균형성장 도모
  - (민관협력) 사업화 지원·투자 등 민간의 지원과 스타트업의 Seed Tech 확보를 위한 R&D 동시 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과 제고
  - (부처협력) 초격차 1000+ 프로젝트 등 부처별 창업 육성 정책을 통해 발굴· 선별된 우수 스타트업 대상 R&D 연계지원 강화
- ② TIPS(918억 원) :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(기관)가 발굴·투자한 기술 창업팀에게 보육·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

내역사업		개발기간 및 지원한도	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	지원방식	
디딩	임 <del>돌</del>	최대 1.5년, 2억 원			
	일반형	최대 2년, 5억 원	7E0/ 0114	자유공모 또는 품목지정	
TIPS	딥테크	최대 3년, 15억 원	75% 이내	품목지정	
	글로벌	최대 3년, 12억 원			

# (3)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

#### □ 사업개요

- 50인 미만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기반 산재예방 R&D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체계 확립
- □ 지원규모 : 16.5억 원(신규 16.5억 원)
- □ **지원대상**: 주관연구개발기관(공급기업)·공동연구개발기관Ⅱ(도입기업)·대학·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
  - (주관연구개발기관, 필수) 제조현장 안전 관련 진단·점검·예방·대응을 위한 개발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
  - (공동연구개발기관 I, 선택) 제조현장 안전 관련 진단·점검·예방·대응을 위한 개발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대학, 연구소 등
  - (공동연구개발기관Ⅱ, 필수) 제조현장 안전 관련 진단·점검·예방·대응 기술 및 시스템을 실증할 Test-bed를 제공하고 개발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(2개사 이상)

# □ 지원내용

- (R&D) 도입기업(50인이하 제조업)의 제조현장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·진단·점검·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
  - 산업 안전센서, 개인화 웨어러블 장비, 모니터링 제품, 로봇 개발, 각종 안전 솔루션 등 도입기업 수요기반 제품개발을 통해 성과물 확산
- (실증) R&D 결과물의 제조현장 적용을 위해 도입기업의 Test-Bed를 활용한 실증 및 성능검증을 통한 보급·확산 촉진

내역사업	개발기간 및 지원한도	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	지원방식
디지털기반중소제조 산재예방기술개발	최대 2년, 6.6억 원	75% 이내	품목지정

- \* 고용노동부 협의('23년)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50인 미만 제조중소기업 10개 업종의 주요 사고 발생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총 4개의 품목\*\*으로 구성
- \*\* ① 작업자 행동기반 장비 및 솔루션, ② 위험기계·기구 관리를 위한 장비 및 솔루션,
  - ③ 화재·폭발·누출·질식 해결을 위한 장비 및 솔루션, ④ AI기반 통합 점검·진단 솔루션

# (4) 산학연 Collabo R&D

#### □ 사업개요

- 산학연 협력R&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
- □ **지원규모**: 570억 원(신규 451억 원, 계속 119억 원)

#### □ 지원대상

- (주관연구개발기관)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중소기업
- (공동연구개발기관) 산학연협력 R&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또는 연구기관
  - \* 주관연구개발기관(중소기업)과 공동연구개발기관(대학, 연구기관)의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 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(컨소시엄형 예비연구 과제는 예외)

# □ 지원내용

구분	일반형 과제				
	· 개별과제(1:1 협력)				
	과제1 과제2 과제N	I			
과제유형	주관 (기업) 주관 (기업) (기업)				
	공동 (대학) 공동 (연구소) (대학)				
분야	· 제한 없음				

컨소시엄형 과제						
· 개별고	바제의 묶음	음 과제(多:多	3 협력)			
	컨소	시엄형 과제	Α	1		
	세부	세부	세부			
	<b>과제1</b> 주관	<b>과제2</b> 주관	<b>과제N</b> 주관			
	(기업)	(기업)	(기업)			
	공동	공동	공동			
[(대학)] [(연구소)] [(연구소)]						
│ · 지역전	선략분야(레	전드50+ 등	·), 국가전릭	<b></b>		

내역사업	단계	개발기간 및 지원한도	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지원한도	지원방식	
 컨소시엄형	1단계(예비연구) 8개월, 2억 원이내			분야지정	
(2~4개 일반형 과제로 구성)	2단계(사업화R&D)	최대 2년, 10.4억 원 이내	750/ Oli II	[ 포약시경 	
 일반형	1단계(예비연구)	8개월, 0.5억 원이내	75% 이내	1070	
(산학협력, 산연협력)	2단계(사업화R&D)	최대 2년, 2.6억 원 이내		자유공모	

- \* 1단계(예비연구) :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R&D를 통한 기술검증, 선행기술조사, 사업수요조사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인
- \*\* 2단계(사업화R&D)는 1단계(예비연구)를 수행(완료)한 과제만 신청 가능

# (5)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(R&D)

#### □ 사업개요

- 지역 주력산업<sup>\*</sup> 분야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
  - \* 매출, 고용 등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(14개 시도 41개 산업선정)

□ 지원규모 : 215.6억 원

□ 지원유형 : 품목지정형

□ **지원대상**: 비수도권 14개 시·도 소재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
- (주력산업생태계구축)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2개 이상 중소기업 및 대학· 대·중견기업 컨소시엄
  - \* 중소기업(주관)+ 중소기업(공동)(필수) + 대학(필수) 또는 대·중견기업, 연구기관(선택)
- (지역기업역량강화)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잠재기업
  - \* 중소기업(주관) + 대학·대중견기업·연구기관(선택)

# □ 지원내용

- 주력산업생태계구축(137.2억원) : 혁신성·성장성을 갖춘 (예비)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 협업과 산학협력 중심 기술혁신 지원
- 지역기업역량강화(78.4억원) : 지역주력산업 분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&D지원

내역사업	개발기간 및 지원한도	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	지원방식	
주력산업 생태계구축	최대 2년, 연 7억 원	75% 이내	품목지정	
지역기업 역량강화	최대 2년, 연 2억 원	75% 이내	품목지정	

# (6)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

#### □ 사업개요

- 이공계 연구인력을 양성 및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
  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
- □ **지원규모** : 341억 원(신규 162억 원, 계속 179억 원)

# □ 지원내용

-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(52억 원)
  - 중소기업이 신진 연구인력\*을 채용 시 기준연봉의 50% 지원
  - \* 이공계 학·석·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인 자(만 39세 이하)
-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(42억 원)
  - 중소기업이 고경력 연구인력\*을 채용 시 연봉의 50% 지원
  - \* 이공계 학위취득 후 학사 14년, 석사 10년, 박사 5년 이상 연구경력자
-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(20억 원)
  - 중소기업으로 연구인력\* 파견 시 파견 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% 지원 \* 석·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
-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(48억 원)
  - 중소기업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해 '24년에 선정된 권역별 4개 연구인력혁신센터의 프로그램\* 운영비 48억원 지원(센터당 12억원 지원)
  - \* (Level 1) 중소기업-연구인력 매칭, (Level 2)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채용된 예비연구자의 학위별 지원금 지원 (Level 3) 인턴 과정을 수료한 신진연구자에 대한 기업 내 멘토링 방식의 R&D 프로젝트 수행 지원
  - ※ 참여 중소기업 모집 공고는 권역별 4개 연구인력혁신센터에서 별도 시행 예정

구 분	정부지원 연구개발비지원한도	정부출연금 비율	지원방식
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	최대 3년, 기준연봉의 50%	50% 이내	
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	최대 3년, 연봉의 50%(최대 5,000만 원/년)	50% 이내	-107-
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	최대 3년 파견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%	50% 이내	자유공모
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	기업당 최대 1,400만 원/년	100% 이내	

# 3. 사업별 문의처

# □ 사업별 문의처

세부사업명	내역/	<b>나업명</b>	중소벤처기업부	전문(관리)기관	연락처	
	수출기	수출지향형				
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	시장확대형		기술개발과	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(기술혁신사업실)	중소기업	
	시장[	대응형			통합콜센터 1357	
창업성장	디딩	림 <b>돌</b>	기술개발과	(창업성장사업실)		
기술개발	ТІ	PS	신산업기술창업과	한국엔젤투자협회	02-3440-7421	
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기술개발	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기술개발		디지털혁신과	(창업성장사업실)		
	산학협력	예비연구	- 기술개발과			
산학연	2484	사업화R&D		  (전략협력사업실)		
Collabo R&D	산연협력	예비연구				
		사업화R&D				
지역혁신선도	주력산업생태계구축		-10411171#J			
기업육성R&D	지역기업	역량강화	지역혁신정책과	(지역특화사업실)	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	
	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					
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	고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		- 인력정책과			
	공공연 연구인	인력 파견지원	[ 단국·증격·시	(지역정책기획실)		
	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					

- 1)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 신청 시 시스템 관련 문의처 : 1877-2041
- 2) 담당 부서 및 전문(관리)기관은 세부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